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
■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호)

2024.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취지	4
2. 특별검사제도의 연혁	4
3. 제정안의 주요내용	6
4. 조문별 검토	9
가. 목적 및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안 제1조·제2조)	9
나.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안 제3조~제5조)	12
다. 특별검사등(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권한 및 의무 등 (안 제6조~제8조)	15
라.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안 제9조~제12조)	19
마.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 등(안 제13조~제17조)	22
바. 재판관할, 이의신청, 벌칙 및 부칙(안 제18조~제22조, 부칙)	24
※ 참고자료	27
1. 개별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시행 연혁	27
2.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내용 비교	2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은정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4. 5. 30.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였다는 등의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에 관련되어 있다는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음.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각종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법무부장관이었다는 이유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노골적으로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킨 바 있고, 다수의 국민들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들도 평범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

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 제정안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게 함으로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임.

2. 특별검사제도의 연혁

- 1999년 9월 30일 법률 제6031호로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 및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 임명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래 2024년 6월 말 기준 총 13건의 개별적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이하 ‘개별특검법’)이 제정·시행 되었음.¹⁾
- 2014년에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상설특검법’)이 제정되어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 근거²⁾를 마련하였음. 2024년 6월 현재까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임명된 사례는 이현주

1) 각 개별특검법의 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참조

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23호, 2014. 6. 19. 시행)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2021. 4.)가 유일하며, 상설특검법 제정 이후에도 개별특검법이 3차례³⁾ 제정·시행된 바 있음.

- 상설특검법 및 개별특검법은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 등이 있는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 등을 대상⁴⁾으로 함.

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11.시행),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8.5. 시행),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2.4. 시행)

4)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수사대상은 ①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②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서, 국회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제정안의 주요내용

- 제정안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것임.
- 제정안에 따라 국회의장이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후보자추천을 의뢰하여야 하고,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정당은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며,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을 30명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파견검사는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3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음. 수사기간은 7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음.

○ 상설특검법과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 상설특검법과 제정안 비교

구 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설특검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사대상	① 국회 본회의 의결 사건 ②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①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②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뤄진 대리인 교체로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사건 ③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에세이 표절 의혹 및 봉사활동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 하여 봉사상 등을 수상하였다는 의혹,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④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체포동의안의 취지를 넘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⑤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법률에서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기 위해, 직접 관련성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결국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를 위반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위법하게 확대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사건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 검사 임명	절차	① (지체 없이) 대통령의 후보자추천의뢰 ② (5일 이내) 특검후보추천위원회 특별 검사후보자 2인 추천 ③ (3일 이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의뢰

구 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설특검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③ 교섭단체와 정당은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 - 의뢰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추천후보자 중 1인) - 3일 이내
	자격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 변호사
	결격 사유	1. 국민이 아닌 자 2.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 공무원이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5. 공직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6. 공무원결격자	1. 국민이 아닌 자 2.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 공무원이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나 가졌던 자 5. 공직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6. 공무원결격자
특별검사보		① 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 특별검사의 임명요청(후보자 4인) ③ 대통령의 2인 임명	① 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 특별검사의 임명요청(후보자 6인) ③ 대통령의 3인 임명
특별수사관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수사협조 및 지원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 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 파견검사 5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 시 징계요청권. 다만, 파견요청 전 관계기관장과 협의 의무)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 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 시 징계요청권)
수사 기간		① 준비기간: 20일(수사금지 명시) ② 원칙: 60일 ③ 연장: 30일(대통령 승인사항)	① 준비기간: 20일(수사금지 명시 없음) ② 원칙: 70일 ③ 연장: 30일(대통령 승인사항)
재판 기간		① 1심: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② 2심: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③ 3심: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① 1심: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② 2심: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 ③ 3심: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
사건 처리 보고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통지	*사건의 대국민 보고 가능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시 10일 이내에 대통령, 국회에 서면 보고

4.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안 제1조·제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2.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뤄진 대리인 교체로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사건
3.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의혹 및 봉사활동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리는 등 허위기재 하여 봉사상 등을 수상하였다는 의혹,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4.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체포동의안의 취지를 넘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5.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법률에서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기 위해, 직접 관련성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결국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를 위반하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위법하게 확대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안 제2조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제1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에서의 고의적 항소심 패소 및 상고 포기 의혹 사건(제2호), 딸 논문 대필 등 의혹 사건(제3호), 이재명의원 체포 동의 요청 시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사건(제4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의혹 사건(제5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기존 개별특검법의 수사대상 규정례를 살펴보면, ㉠ 특정한 의혹사건으로 한정된 사례,⁵⁾ ㉡ 특정한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의혹사건으로 규정한 사례,⁶⁾ ㉢ 특정 의혹사건 및 관련사건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을 모두 규정한 사례⁷⁾가 있음.
- 안 제2조제6호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특별검사 수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관련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통상의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기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⁸⁾

5)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으로 한다.

1.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2.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사건

6)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한다.

1.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 관련 외압의혹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출과정에서의 불법·편법 및 외압의혹, 러시아 알파에코사와의 계약 및 계약 파기과정에서의 의혹, 이와 관련된 의혹사건
2. 제1호의 참여과정에서 전대월 하이앤드 그룹 대표·권광진 쿼에너지대표·허문석 코리아크루 드오일 대표와 관련된 의혹사건

7)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전 남한건설 대표이사 정용재가 부산지방검찰청 등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 및 시사인(2007년 8월 29일 등록 서울 다 07800)과 주식회사 문화방송(PD수첩)에 제보한 것과 관련된 박기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직·현직 공무원들의 불법자금·향응수수 및 직권남용의혹사건
2. 주식회사 문화방송(PD수첩)이 2010년 6월 8일 방영한 것에서 출연한 인물들이 진술한 것과 관련한 전직·현직 공무원들의 불법자금·향응수수 및 직권남용의혹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건과 관련되어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고소·고발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8)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8, 2008. 1. 10.

...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당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수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특별검사가 법률전문가인 점,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7호가 ‘제1호 내지 제6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여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과 유기적·체계적으로 관련지어 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안 제3조~제5조)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안 제3조에 따라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대통령에게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됨.

○ 안 제4조에 따라 정당의 당적을 가지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로 등록한 사람 등은 특별검사가 될 수 없음.

○ 지금까지 제정된 개별 특검법(총 13건)의 특별검사 추천자 규정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장(4건) 또는 대한변호사협회(5건)가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원행정처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고,⁹⁾ 그 밖에 2012년 9월 특검법¹⁰⁾에서는 민주통합당이, 2016년 11월 특검법¹¹⁾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2018년 5월 특검법¹²⁾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합의하여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 한편, 안 제3조제3항에서 특별검사후보자의 자격으로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참고로 특별검사후보자 자격 규정례를 살펴보면, 상설특검법¹³⁾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

9)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2. 4. 26. 제정)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장 및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를 각각 2명씩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합의하여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0)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민주통합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2)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서면으로 4명의 추천을 받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력’으로 규정하고, 개별특검법에서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7건),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5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1건¹⁴⁾)이라고 규정한 사례가 있음.

-
- 1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1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 특별검사등(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권한 및 의무 등 (안 제6조~제8조)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공판기록, 수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제4항, 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	---	--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 제정안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역할을 살펴보면, 특별검사는 안 제2조에서 규정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안 제6조제1항),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건의 수사 등을 수행함(안 제7조제2항).

○ 제정안의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를 살펴보면, 특별검사가 6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그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참고로,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가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2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⁵⁾

○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안 제7조제3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최대 10명의 파견검사와 최대 30명의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제4항).

1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 파견검사 5명 이내, 파견공무원 30명 이내)¹⁶⁾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수사대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 안 제6조제5항은 특별검사의 협조요청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이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⁷⁾

- 한편, 안 제8조제2항은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과 파견공무원 등은 수사기간 연장사유 보고(안 제9조제3항·제4항)와 사건 처리보고(안 제11조), 사건의 대국민보고(안 제12조) 외에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6)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제8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기관 근무 경력,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검사가 특정 검사 및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4항은 상설특검법¹⁸⁾과 마찬가지로 특별검사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상설특검법과 달리 위반시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 특징임.

- 그 밖에 제정안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도 특별검사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개별특검법 13건 중 9건은 공소유지단계에서는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¹⁹⁾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검사 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19)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상설특검법 제정 이후 제정된 개별특검법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상 4건의 개별특검법에서만 별도의 단서 규정 없이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②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안 제9조~제12조)

-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제정안은 상설특검법과 마찬가지로²⁰⁾ 특별검사의 수사준비기간을 20

2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

일로, 수사기간을 70일 이내로 하되,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또한, 제정안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은 제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 대해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상설특검법은 재판기간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제1심),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제2심 및 제3심)로 규정하고 있음.²¹⁾

○ 그 밖에 안 제12조에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상설특검법에는 유사한 규정이 없고, 최근 개별특검법²²⁾에서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2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

유사하게 규정한 바 있으며, 수사 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²³⁾도 있음.

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23) 「주식회사지엔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 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8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③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③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마.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 등(안 제13조~제17조)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고,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후보자추천을 의뢰하여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며(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대통령은 특별검사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특별검사를 해임하되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한편, 안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특별검사보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재차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안 제15조제3항에 단서 규정을 신설·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²⁴⁾

24) (안 제15조제3항 단서 신설 안)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재판관할, 이의신청, 벌칙 및 부칙(안 제18조~제22조, 부칙)

제18조(재판관할)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벌칙) ① 특별검사 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 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 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안 제19조제1항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외에 별도로 공소제기가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²⁵⁾
- 안 제21조는 벌칙을 규정하면서 특별검사등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지득한 정보를 소속기관에 보고한 경우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등, 파견공무원,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 또는 자격정지만 규정하고 있음.²⁶⁾

2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26)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 (생략)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특별검사등이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수사내용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문 의 처
02) 6788-5060

※ 참고자료

1. 개별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시행 연혁

법 률 명	본회의 의결일	공포일·시행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2.4.15.	2022.4.26.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8.5.21.	2018.5.2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6.11.17	2016.11.22.
이명박 정부의 내국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9.3.	2012.9.21.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2.9.	2012.2.22.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0.6.29.	2010.7.1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12.17.	2007.12.28.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11.23.	2007.12.10.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5.6.30.	2005.7.2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솔·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003.11.10.	2003.12.6.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2003.2.26.	2003.3.15.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001.11.22.	2001.11.26.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웃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1999.9.20.	1999.9.30.

* 역대 특별검사법의 주요 내용 비교는 [참고자료2] 참조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은 2021. 4. 2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한 경우 1건이 있음.

2.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내용 비교

구분	조폐공사파업및 웃로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특검법	검사등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구분	절차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추천의뢰 -3일 이내 ③대한변협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작동)	(작동)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추천의뢰-3일 이내 ③대한변협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추천의뢰-3일 이내 ③대한변협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추천의뢰-3일 이내 ③대한변협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추천의뢰-2일 이내 ③대법원장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추천의뢰 -2일 이내 ③대법원장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추천의뢰 -3일 이내 ③민중통합당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결 또는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추천의뢰 -지체없이 ③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추천의뢰 -3일 이내 ③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추천의뢰 -3일 이내 ③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과정의원의원이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추천의뢰 -3일 이내 ③교섭단체 합의로 법원행정처장 및 대한변협 회장이 각각 2인씩 추천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자격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작동)	(작동)	10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 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결격사유	①공무원 ②법 시행 전 1년6월 이내에 공무원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 자 ④공무원결격자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 자 ④공무원결격자	(작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 자, 가진적 있는 자 ④공무원결격자	(작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 자 ④공무원결격자	(작동)	(작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 자, 가진적 있는 자 ④공무원결격자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내 공무원이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 자 또는 특검임명 전 1년 이내에 당적기졌던 자 ⑤공직선거(예비) 후보자 등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결격자	(작동) +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	(작동)	(작동)

구분	조폐공사파업및 웃로비 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특검법	검사등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특별 검사보	①10년 이상 법조경 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2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1인 임명	①10년 이상 법 조경력 변호 사 ②특별검사의 4 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2인 임명	(작동)	①7년 이상 법조경 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 명	①7년 이상 법조경 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4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2인 임 명	①7년 이상 법조경 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 명(판검사 비경 력자 1인 이상)	①7년 이상 법조경 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10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5인 임 명(판검사 비경 력자 2인 이상)	①7년 이상 법조경 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6 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 명(판검사 비 경력자 1인 이 상)	(작동)	①7년 이상 법 조경력 변호 사 ②특별검사의 임 명요청 (후보자 6인)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①7년 이상 법 조경력 변 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4인)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① 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 호 사 ② 특별 검 사 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4인 임명	① 7년 이상 법 조경력 변 호사 ② 특별 검 사 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③대통령의 3인 임명	① 7년 이상 법 조경력 변 호사 ② 특별 검 사 의 임명요청 (후보자 4인 이내) ③대통령의 4인 이내 임명
특별 수사관	특별검사가 사건당 12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6 인 이내 임명	(작동)	특별검사가 사건 당 16인 이내 임 명	특별검사가 2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작동)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5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권 한	①수사협조요청권 ②인력지원요청권 -판검사 2인 이내, 파견 공 무원 10인 이내 ③참고인동행명령권 (2회 이상 불응시)	①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요청권 -판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 원 15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동행명 령권	①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요청권 -판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15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동행명령권	①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요청권 -판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2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동행명령 권	(작동)	①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요청권 -판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동행명령 권	①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요청권 -판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5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동행명령 권(위헌)	①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요청권 -판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5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작동)	①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요청권 -판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 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①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요청권 -판검사 5인 이내, 파견 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단 파견요청 전 관계기관과의 협의 의무)	①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요청권 -판검사 20인 이내, 파견 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①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요청권 -판검사 13인 이내, 파견공무원 35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①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인력지원요청권 -판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수사 기간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칙: 3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60일)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칙: 60일 ③연장: 30+15일 (대통령승인) (최장 105일)	①준비기간: 20일(수 사금지) ②원칙: 70일 ③연장: 30+2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보고)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보고)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15일 (대통령 보고) (최장 125일)	①준비기간: 7일(수 사금지) ②원칙: 30일 ③연장: 10일 (대통령승인) (최장 40일)	①준비기간: 20일(수 사금지) ②원칙: 35일 ③연장: 20일 (대통령승인) (최장 55일)	①준비기간: 20일(수 사금지)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90일)	①준비기간: 10일(수 사금지) ②원칙: 30일 ③연장: 15일 (대통령승인) (최장 45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9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7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7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재 판 기간	①1심: 3월 ②2심: 2월 ③3심: 2월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①1심: 6개월 ②2심: 3개월 ③3심: 3개월	①1심: 3개월 ②2심: 2개월 ③3심: 2개월	(작동)	①1심: 6개월 ②2심: 3개월 ③3심: 3개월
사건 처리 보고	불기소결정, 공소제 기, 판결확정시 10 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 회에 서면보고	(작동)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능	(작동)	(작동) 중간수사발표규 정없음	(작동)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능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통지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언론브리핑 가능	(작동)	(작동)

구분	조폐공사파업및 옷로비 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특검법	검사등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곡동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		
재판 관할	서울지법 합의부 전속관할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서울중앙지법 합의 부 전속관할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벌칙	① 직무수행 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 하 벌금	① 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 역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직무수행 방해: 5년이하 징역	① 직무수행 방 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 하 벌금	① 직무수행 방 해: 5년이하 징역	(좌동)	(좌동)
	② 공무상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② 동행명령 거 부: 1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위헌)				② 공무상비밀누 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 년 이하 자 격정지	② 공무상비밀누 설: 3년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 지 또는 3 천 만 원 이 하 벌금	(좌동)	(좌동)
	③ 수사내용 공표누 설: 3년이하 징 역 또는 5년이 하 자격정지										③ 수사내용 공 표누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이 하 자격정지	③ 수사내용 공 표누설: 3년 이하 징역, 5년이하 자 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좌동)	(좌동)
	④ 동행명령 거부: 1천만원이하 벌 금											④ 직무수행 중 자득정보 소속 기관 보고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좌동)